

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4년 2월 13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행정안전부장
(법무부 소관) 이상민

● 법률 제20265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2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정지되는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포함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